

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구이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: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국가공무원법 제33조

● **제33조[결격사유]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장소: 구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다. 기간: 2020년 3월 30일 ~ 4월 1일까지(09:00~16:30)(3일간)

라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(사진 1매, 구이중행정실 비치, 학교홈페이지 탑재)

2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: 2020년 4월 9일(목) 14:00 ~ 16:30

나. 선거장소: 구이중학교 강당

다. 선거방법: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 및 우편투표 병행

라. 학부모 위원 정수: 4명

마. 소견발표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(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)

바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0년 4월 7일 ~ 4월 8일 (행정실)

3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0년 3월 24일

구이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(직인생략)